

의안번호	2203619
의 퇴 인	신성범의원
회 답 일	2024.10.8.
추계번호	24C3670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의2 (사무국의 설치)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함 (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14조의2 (장례비 지원)	○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사망한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해야 함 (제1항 및 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14조의3 (복지지원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피해자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함 (제1항) 1. 의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2.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3. 피해자 단체의 운영지원 4. 그 밖에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의2 (사무국의 설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4조의2 (장례비 지원)	
3	안 제14조의3 (복지지원사업)	

2. 상세 사유

□ 사무국의 설치(안 제6조의2)

- 개정안에 따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현행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피해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사무국의 업무 내용 및 인적구성 등 추계에 필요한 정보를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어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함
 -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협의회 구성은 재량규정으로써 현재 피해자지원사업을 운영 중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어 현시점에서는 구성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임¹⁾

□ 장례비지원(안 제14조의2)

- 개정안에 따라 장례비 지원의 대상자를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확대할 경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보건복지부는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사업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건강수첩 미소지자 중 장례비 신청자에게 장례비 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총 1,050만원을 지원함²⁾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수, 지원금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관한 지원 대상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없고 지원금액의 수준과 범위에 관련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재정소요 규모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

1)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피해자 대표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2) 건강수첩은 원자폭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본정부가 발급하는 것으로, 건강수첩 소지자는 진료비 지원(상한액 30만엔), 장례비 지원(21만 2천엔)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1,763명 중 건강수첩 소지자는 1,726명, 미소지자는 37명임

이 곤란함

□ 복지지원사업(안 14조의3)

- 개정안은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및 의료복지시설의 설립·운영 지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필요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지원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고,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복지시설 설립·운영 경우의 병상수 및 의료인력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함
 - －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건강수첩 미소지자 중 건강검진 신청자에게 연 1회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455만원이 지원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장우윤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4741	jangwy93@assembly.go.kr